

경희대학교 실습학기제 표준협약서

제1조. (목적)

이 실습학기제 교육 협약서는 회사 대표, 기관장 (이하 “실습기관”이라 한다)과(와) 실습학기제생 김아영 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과(와) 경희대학교 (이하 ‘대학’이라 한다.) 상호간의 실습학기제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. (교육 기간 및 장소)

실습학기제 교육(이하 “교육”이라 한다) 기간은 2018년 06월 25일부터 2018년 07월 24일까지로 하며, 교육 장소는 “실습기관”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.

제3조. (교육 방법 및 내용)

교육은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“대학”은 실습계획, 준수사항,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신청 처리한다

제4조. (실습기관의 의무)

“실습기관”은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“학생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, 장비 등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.
2. 교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“학생”的 실습을 성실히 지도한다.
3. “대학”的 현장 방문 지도 및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.

제5조. (대학의 의무)

“대학”은 “학생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.

1. 교육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.
2. 교육기간 중 “실습기관”的 사규 및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.
3. 교육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한다.
4. 교육 도중 알게 된 “실습기관”的 기밀을 누설하지 하도록 한다.

제6조. (교육 기준시간)

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, 4주를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. (수당)

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的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 월 0 원정으로 하되, 월 단위로 지급한다. 단,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계약 시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的 협의에 의한다.

제8조. (보험의 부담 등)

“실습기관”은 “학생”이 교육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. (교육의 평가)

“실습기관”은 “대학”이 정한 기준에 따라 “학생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실습기관 평가서를 교육 종료 즉시 “대학”에 제출하며 “대학”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 한다.

제10조. (제경비 지원)

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경비는 “실습기관” 및 “학생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. (교육 협약의 해지)

“실습기관”과 “학생”은 교육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. (기타)

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‘실습기관’, ‘실습생’, ‘학교’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06월 06일

실습기관	• 회사명 : 한성백제박물관
	•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(방이동) 한성백
	제박물관
	• 대표자 : 이인숙
학생	• 소 속 :
	• 주 소 :
	• 성 명 :

대학 경희대학교 총장/학과(전공)



의미 협약서 내용은 화이 하여이며 협약 내용에 동의합니다